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 〉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92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 명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제25조의2 신설)	2
[참고] 시니어 과학기술인 경력이음 지원사업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황정아의원 등 140인

나. 발 의 일 : 2025. 3. 17.

다. 회 부 일 : 2025. 3.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에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개발하고 과학기술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과학기술분야에 진입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R&D 투자 확대와 경제성장으로 급증한 과학기술 인력이 은퇴 연령에 임박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퇴직 후에도 그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 인력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제25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과학기술인이 퇴직 후에도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퇴직 과학기술인을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이를 지원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5조의2(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 ①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퇴직 후에도 그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4장은 과학기술 인력자원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정부가 과학기술인력(제23조), 여성 과학기술인(제24조), 과학영재(제25조)를 양성·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R&D 투자 확대로 급증해왔던 과학기술 인력이 대거 은퇴하는 시기에 맞추어 이들의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국가 R&D 역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퇴직 과학기술인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1)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인력의 중·장기 수요·공급 전망의 수립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공급계획 수립
3.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
4.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5.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력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후 략)

보임.

첫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이공계지원법”이라 함)에 유사한 취지의 조항이 존재하므로 퇴직 과학기술인 지원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이 중복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025년 6월 신설된 이공계지원법 제17조의2²⁾에 따르면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을 “고경력과학기술인”으로 보고 정부가 이들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이공계지원법」은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으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인에 관한 일반법인 「과학기술기본법」에 퇴직 과학기술인 지원 근거를 신설하기 전에 「이공계지원법」 제17조의2를 개정하는 것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퇴직 과학기술인’의 범위가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법률 제20570호(2025.6.21. 시행예정) 제17조의2(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① 정부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이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2.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참여 및 창업 활동지원

3.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연계 지원

4.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② 정부는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관리와 적합한 직무 발굴,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다.

③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지원법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시책으로서 연구경력 10년 이상으로 퇴직한 석·박사급 과학기술인의 중소기업 재취업을 지원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 경력이음 지원’을 202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임 ([참고] 시니어 과학기술인 경력이음 지원사업)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우선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인의 범위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어느 기관에 재직 한 경우 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해당 기관 내에서도 직군을 기준으로 교수나 연구원으로 한정할 것인지 대학원생 또는 행정직 군 직원도 과학기술인에 포함되는 것인지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또한 퇴직의 범위에 대하여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한 재직 기간의 최소한도 등 범위를 둘 수 있는데, 적절한 재직 기간의 기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퇴직 과학기술인 또는 과학기술인을 정의한 관련한 유사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음.

< (퇴직) 과학기술인 관련 유사 정의 사례 >

법률	(퇴직) 과학기술인 관련 정의	
「이공계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이공계인력	이학(理學)·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⁴⁾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 (고경력과학기술인)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으로서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 ⁵⁾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으로서 첨단기술기업, 공공연구기관, 연구소기업, 외국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예정인 사람 포함) ⁶⁾

법률	(퇴직) 과학기술인 관련 정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이학(理學)·공학 분야의 연구직·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⁷⁾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과학기술인공제회 일반회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기업부설연구소 임원·연구원·소속직원 및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등 ⁸⁾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이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 기획 또는 과학기술 교육·홍보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다.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법인
 -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경력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이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첨단기술기업
2. 공공연구기관
3. 연구소기업
4. 외국연구기관
5.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 등

7)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인 ‘퇴직 과학기술인’의 범위는 유사 정의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대다수의 사례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를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셋째,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운영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이 의도하고 있는 전문기관이 퇴직 과학기술인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기능을 하는 것인지, 이들이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

여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이학(理學) 또는 공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 다.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여성

8)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회원의 자격) ①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직원
5.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개설된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의 회원 및 임직원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
7.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
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의 기관·사업자 및 법인 등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10.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도록 재고용하는 연구기관의 일종인지 등 구체적인 전문기관의 역할 및 운영 방향을 결정하여 제2항에 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39조9)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영재교육연구원 등이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으로서 지정되어 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계획을 세우고 육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227

9) 「과학기술기본법」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9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세우고, 이를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영재의 발굴·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2. 과학영재 교육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및 활용
3. 과학영재 교육기관 간 연계운영체제의 구축방안
4. 과학영재 육성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1. 한국과학창의재단
2. 「영재교육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영재교육연구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개요

- 중소기업과 시니어 과학기술인을 매칭하여 취업 전 단기 연구원으로 해당 기업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 산업현장, 기업의 연구환경 및 조직문화 등의 이해도 제고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 중소기업 상호 간 신뢰관계 형성 강화
- 지원대상
 - (기업) 고급 연구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애로기술 보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인력) 중소기업 재취업을 희망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
 - * 공공(연)/대학/기업연구소 등 연구경력 10년 이상으로 퇴직한 석박사급 과학기술인
- (예산) '25년도 900백만원(신규)

□ 주요 내용

-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기 연구원 지원사업(6억원)
 - 기업의 애로기술 분야와 특성에 따라 공정개선, 시험검증, 기술개발 등을 위한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기 연구원 채용지원**
 -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며 기업 애로기술 해결 등 R&D 수행
 - * 정부지원 및 민간매칭(기업부담)으로 임금 지급
- 시니어 과학기술인 기반구축(3억원)
 -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체계적 관리**(DB 확대, 매칭 코디네이터 운영 등), **사업지원**(경력전환 교육, 실태점검 등) 및 **성과확산** 등 추진
 - * 과학기술인 DB 확대 및 홈페이지 운영: 시니어 과학기술인 모집 및 홈페이지 운영 등
 - * 매칭 코디네이터 운영: 기업 과제 사전 검토와 과학기술인 매칭 지원 등
 - * 사업운영 및 성과확산 등: 경력전환 교육, 과제 관리, 실태점검, 만족도 조사 등